

HPAI 발생, 농가 지원 방안은?

AI 발생지역 농가 등 지원방안

농림수산식품부

1. 현재까지의 AI 발생현황

□ 2010. 12. 29일 충남 천안 오리농장과 전북 익산 닭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

○ 발생상황 및 주요 조치사항(2011. 1. 30 현재)

- 검사 실적

검사실적				합계	발생건수 (농가)
양성	음성	검사중	검사완료		
40	39	2	81	40	

- 이동통제초소 : 252개소 설치·운영

○ 매몰 처분현황(2011. 1. 17 현재) : <표 1> 참조

2. 지원 기본원칙

- 살처분·이동제한 등 방역조치에 따른 농가 등의 손실을 조기에 지원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자발적 방역참여 유도
- 과잉지원에 따른 농가 방역활동 해이 방지
- 현행 법령 및 과거 사례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지원
- 불법행위농가 등 방역관련 의무와 책임을 해태한 농가 등은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감액 지원

〈표 1〉 매몰 처분현황

시군별	매몰대상		매몰실적				잔여수수	
	농장	수수	1:16	농장	수수	농장	수수	농장
안성	8	197,177	1	44,174	8	197,177	-	-
이천	1	160,000	-	-	-	-	1	160,000
천안	4	41,740	-	-	4	41,740	-	-
아산	1	44,706	-	-	1	44,706	-	-
서천	1	201	-	-	1	201	-	-
익산	3	168,238	-	-	3	168,238	-	-
영암	58	1,200,328	-	-	56	1,124,528	2	75,800
나주	69	1,542,650	4	40,950	59	1,219,450	10	323,200
화순	2	67,600	-	-	2	67,600	-	-
장흥	3	149,300	-	-	3	149,300	-	-
여수	11	247	-	-	11	247	-	-
합계	161	3,572,187	5	85,124	148	3,013,187	13	559,000

※ 2011. 1. 17 현재

3. 지원체계

구분	대상	지원
살처분보상금	○ 살처분 가축과 생산물 및 폐기되는 사료 등 기자재 ○ 이동제한 지역내 폐기 알	농특회계 (보조)
생계안정자금	○ 일정기간 입식이 제한되는 살처분 농가의 수익 재발생시기까지 소득미발생에 따른 가계비 * 계열농가의 경우 살처분 가축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계열주체로부터 위탁사육에 따라 소득이 발생되므로 생계안정자금 지원	축발기금 70% 지방비 30% (보조)
소득안정자금	○ 이동제한 전 출하하였으나, 이동제한 조치로 입식을 못한 농가 및 이동제한 조치로 출하지 연 농가에 대한 소득손실 보전	축발기금 70% 지방비 30% (보조)
가축입식자금	○ 살처분 대상농가의 재생산 여건 제공	일반회계 (이차보전)
경영안정자금	○ 방역대책으로 영업제한 도계장, 부화장, 가공장, 사료공장 등 경영 지원	일반회계 (이차보전)
수매자금지원	○ 이동 제한지역 내 가축 수매 실시 * 수급 및 가격동향 등을 감안, 계열업체를 통한 차액보상 등 검토	축발기금 (보조)

4. 지원대상 및 내용

가. 살처분보상금

- 지원근거 :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
-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, 조건 등을 「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」에 규정
 - 시·군·구 보상금평가반*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보상금 결정
 - * 평가반 : 시·군축산과장(반장), 시·군 방역계장, 축협, 가축위생연구소, 공수의 등 5명 이내
- 주요 살처분·폐기 대상
 - 가축, 사료 등 오염우려 기자재, 이동제한 농가가 생산하는 알
- 살처분 보상가격은 산지 당해 시·도 평균가격으로 하되, AI 발생으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특정기간 가격 적용을 검토
 - * 2006년 : 산지가격이 대폭 하락하여 AI 발생전 7일간(11.15~11.21)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
- 지원제한 : 질병발생 신고지연, 소독소홀, 질병가축의 격리·역류·이동제한 미이행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농가 등은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감액지원

나. 생계안정자금(표 2, 표 3 참조)

□ 지원근거 및 내용

-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 가축 살처분 후 수익 재발생시까지(최대 6개월) 사육농가에게 생계안정비 지원
 - 생계안정비 상한 : 1,400만원(전국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)
 - * 2008 전국 평균가계비 2,710만원/년
 $\div 2 = 1,355\text{만원} \times 1.033\%$ (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)
 - 생계비 지원금액은 월평균 가계비와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, 살처분 마리수를 구간으로 정하여 농가당 지원 한도를 설정
 (2002년 구제역, 2010년 1·4월 구제역, 2008년 AI 대책시 지원 방식과 동일)
 - 수익재발생기간 : 종계 및 산란계 (오리포함) 6개월, 육계 3개월
 - 살처분 수수에 따라 차등지원
- 지원제외(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함)
 - 소독소홀, 출입통제 위반, 질병가축의 격리·역류·이동제한 미이행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농가 등

〈표 2〉 생계비 지원금액(닭)

(단위 : 만원)

살처분 수	100~499수	500~1천수미만	1천~3천수미만	3천~5천수미만	5천~7천수미만	7천~1만수미만	1만~1.5만수미만	1.5만~2만수미만	2만수 이상
산란계 및 종계	70	140	280	560	840	1,120	1,400	1,400	1,400
육계	35	70	140	280	420	560	700	1,120	1,400

* 100마리 이상 살처분 농가만 지원하되, 살처분보상금액의 한도 범위내에서 지급

* 오리, 거위, 칠면조, 기러기, 오골계, 은계 등은 산란계 기준 적용(토종닭은 실제 사육기간을 감안하여 별도산정)

〈표 3〉 생계비 지원금액(메추리)

(단위 : 만원)

살처분 마리수	400~4천수미만	4천~12천수미만	12천~20천수미만	20천~28천수미만	28천~4만수미만	4만수 이상
지원금액	140	280	560	840	1,120	1,400

* 400마리 이상 살처분 농가만 지원하되, 살처분보상금액의 한도 범위내에서 지급

다. 소득안정자금

(출하일령 초과일수 또는 출하후 미입식 일수/사육기간)

□ 이동제한 지역 내 사육농가 및 역학관련 농가의 입식지연 등에 따른 소득 손실액 보전

- 산란계 : 미입식수수×수당소득×(농가별 입식 또는 출하 제한기간/365일)

□ 지원대상

- 과체중 손실 : 추가사육비+손실액(정상가-실제 수취가격)

○ 이동제한 전 출하하였으나, 이동제한 조치로 입식을 못한 농가

○ 출하지연에 따른 상품성 저하 및 정상 입식지연 농가

라. 가축입식자금

※ 지원제외 :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농가

□ 살처분한 농가의 재생산 여건과 조기 경영회복을 위해 가축입식비 융자 지원

□ 지원액 : 농가당 1,400만원 한도 보조지원(축발 70%, 지방비 30%)

○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식하는 경우,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마리수 비용을 지원

○ 농가당 지원기준

- 축종별 병아리(중추 포함) 마리당 지원단가 : 2010년도 평균가격 적용

- 경계지역 : 미입식수수×수당소득×(농가별 입식 또는 출하 제한기간/사육기간)

※ 지원제외 :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농가

- 역학관련 : 미입식수수×수당소득×

마. 경영안정자금

□ AI 방역조치로 영업을 제한받는 도축장, 부화장, 가공장, 사료업체등에게 경영자금 지원

※ 지원제외 : 축산법,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업체

□ 지원내용 및 단가

○ AI 발생으로 인한 영업제한 등의 피해를 감안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

- 영업 중단기간 동안 경영비를 고려하여 지원 규모 산정

• 도계장 : 일 평균 도계두수 × 수당 도계수수료(450원) × 정지일

• 도압장 : 일 평균 도압두수 × 수당 도압수수료(600원) × 정지일

• 부화장 : 부화능력 × 개당 부화비용(150원) × 정지일/부화일(닭 21일, 오리 28일)

• 계란집하장 : 일 평균 집하량 × 개당 집하비용(20원) × 정지일

• 유기질비료제조업체(닭·오리 분뇨이용) : 일평균 생산량(톤) × 계분판매이익(원/톤) × 정지일

* 기타 업체는 위의 기준을 감안하여 필요시 별도산정

바. 가금산물 등 수매지원 방안 검토

□ 산지가격 하락 및 소비급감 등 필요시

수매실시 검토

※ AI 발생 확대로 수매 필요 시 계열업체 등을 통한 차액보상 등 병행 검토

<가금산물 수매>

○ 수매대상 : 육계, 토종닭, 오리 등 가금산물

○ 수매주체 : 농림수산식품부

○ 수매 대행기관 : 농협중앙회(축산유통부) 또는 시·도지사

* 세부 수매방안 : 별도 수립·시행

사. 긴급 가축방역 지원

□ AI 긴급방역에 소요되는 소독약품, 진단키트, 방역복 및 긴급방역지원단 운영비 등 지원

5. 기타 정책지원 등 검토

가.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

□ 지원내용

○ 농축산경영자금 및 축산발전기금

-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원금에 대하여 상환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한 연장 및 이자감면

○ 2008~2009년 지원 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 상환기한 연장 및 이자감면

-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이내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원금에 대하여 상환도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한 연장 및 이자 감면
- 농협 자체 지원자금 등 : 지원자금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농협과 협의·결정
- 지원대상 : 이동제한 조치지역내 해당 축종 사육농가
- 이동제한조치 이외 지역·축종 등 지원대상 확대 필요시는 AI확산상황 등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별도 검토
- 지원방법 : 기획재정부 협의 후 지자체 및 농협중앙회에 방침 시달

나. 자녀 학자금 감면

- 지원내용 : 중·고교·대학생 자녀 학자금 1년간 감면
- 지원방법 :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 후 대상자녀를 파악, 감면조치

다. 세금감면 및 납기연장

- 지원내용 : 살처분 가축 가액이 총자산의 30% 이상일 경우, 자산상실 비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
- 각종 세금의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(6개월)

- 지원방법 : 기획재정부(국세청)와 협의 추진

라.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

- 지원내용 : 질병피해농가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별도로 3억원까지 신용보증 지원
- 동일인당 보증한도(10억원) 내에서 기보증부대출금 외에 추가하여 신용보증 지원
- 신용조사방법도 간이신용조사 방식을 적용, 절차 간소화
- 지원방법 : 농어업재해대책자금 특례 신용보증에 따라 자동 적용

* 단, 농신보 보증은 농협에 한정하여 적용, 농협이외 타 금융기관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 농신보와 약정 등 관련 조치 요구

마. 해외여행 후 입국시 공항만에서 소득 등 조치를 받지 않은 축산농가에 대한 정책자금 등 지원배제

-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해외여행 후 입국시 공항만에서 가축방역기관의 소득 등 조치를 받지 않은 축산농가에 대한 농업정책자금 지원배제
- 대상자금 : 농업부문 지원 정책자금
- 지원 배제대상 : 가축의 소유자 또는

관리자 중 미신고자

(2011. 1. 13일자로 본회의 통과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“신고의무 미이행자”)

※ 적용시기 : 2011년 사업부터 적용
(단, 2011. 1. 13일자로 본회의 통과된 “가축전염병예방법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”)

- 매몰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등 농가지원 삭감(구제역 포함)
-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 추진 (2011년 상반기)
- ※ 세부 시행방안 : 별도 수립 · 시행

6. 조기 지원방안

가. 살처분보상금

- 보상평가반의 평가여부와 상관없이 보상금액을 추정한 후 추정금액의 50%를 빠른 시일내에 가지급하며, 추후 정산 처리

나. 생계안정자금

- 생계안정자금은 지자체가 농가별로 살처분 사육두수를 파악하여 신청 즉시 축종별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원
- 살처분 후 농가신청이 있을 경우, 3개월분 선지급

7. 향후 조치사항

- 관계부처 협조요청 : 기획재정부(국세청), 교육과학기술부
- 살처분보상금(농특회계), 긴급경영안정자금(일반회계), 생계안정자금 · 축산물수급안정(축발기금) 등 재원조치 : 기획재정부
 - AI 확산 등에 따라 재원 부족시 예비비 사용 등 재원조치 협의
-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: 기획재정부
- 중 · 고교 · 대학생 자녀 학자금 감면 : 교육과학기술부
- 세금감면 및 납기연장 : 기획재정부(국세청)
- 지원별 세부지침 수립 · 시행
- 살처분보상 및 생계안정자금 지급 : 동물방역과
- 가축입식자금, 경영안정자금, 수매자금 지원 : 축산경영과
 - 경영안정자금, 가축입식자금은 농협자금 사용 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: 농협중앙회에 필요 조치
 -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내 초과 소요 재원조치 : 기획재정담당관실, 농업금융정책과
- AI 확산 및 방역상황에 따라 지원액 등을 신속하게 조정